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 전담 인력(7급 1명) · 지역소멸 대응 생활 인구 개발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6급 1명) ·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 지원 인력보강을 위해 인력(6급1명, 7급 1명) ·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인력 보강을 위한 인력(5급 1명, 6급 1명) · 장래인구추계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5급 1명) ·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인력(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구추계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도 신설 및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청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5명(8급 5명)을 직급상향(7급 5명) 하며, 종전 기획재정부령 제858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령 제916호에 따라 직급상향된 인력 24명(6급 13명, 7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4일에서 2026년 5월 24일로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경제통계국의 1개 심의관과 사회통계국의 1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가계수지동향과**·**복지통계과**·**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를”을 “**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가계수지동향과**·**복지통계과**·**농어업통계과**·**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로, “**보한다**”를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인구동태**”를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3.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및 스마트조사센터**를”을 “· **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로, “**보한다**”를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역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685**”를 “**69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0**”을 “**152**”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1**”을 “**205**”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66**”을 “**168**”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86**”을 “**69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를 “**153**”으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

서주사 “204”를 “208”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0”을 “172”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3”을 “13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94”를 “399”로 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73”을 “468”로 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3”을 “13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 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4년 5월 24일”을 “2026년 5월 24일”로, “2024년 5월 25일”을 “2026년 5월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와 별표 5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거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구추계팀과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과 지역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구추계팀장과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사회통계기획과장과 조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생략)	제2조(통계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삭제>
9. <u>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u>	<삭제>
10. <u>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u>	<삭제>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삭제>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사회통계국) ① (생략)	제4조(사회통계국) ① (현행과 같음)
②사회통계국에 <u>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가계수지동향과·복지통계과·농어업통계과 및 농어업동향과</u>	②----- <u>사회통계기획과·인구동향과·고용통계과·가계수지동향과·복지통계과·농어업통계과·농어업동향과 및</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생략)

3. 삭제

4.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6. (생략)

7.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8.·9. (생략)

⑤ ~ ⑨ (생략)

<신설>

인구추계팀을 -----

--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1.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태-----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현행과 같음)

<삭제>

8.·9.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

	<u>의 작성 및 분석</u>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 추 계 3.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 석 5.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 구추계에 관한 사항		<u>지원에 관한 사항</u>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 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 항
제5조(조사관리국) ① (생 략)	제5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 음)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계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통 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 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같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 인구총조사과·표본과 및 스마 트조사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u> 한 <u>다</u> .	② ----- ----- · <u>스마트</u> <u>조사센터</u> 및 <u>지역통계기획팀</u> ----- ----- <u>보</u> 하 <u>고</u>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u>보</u>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⑧ 삭 제 <신 설>	⑨ 지역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		

신·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85	693	+8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150	152	+2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1	205	+4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166	168	+2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86	693	+7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사서사무관	152	153	+1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4	208	+4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170	172	+2
·	·	·	
·	·	·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 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 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3</u>	<u>134</u>	+1
사무운영서기보	<u>14</u>	<u>13</u>	-1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사서주사보	<u>394</u>	<u>399</u>	+5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전산서기·사서서 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u>473</u>	<u>468</u>	-5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 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 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3</u>	<u>134</u>	+1
사무운영서기보	<u>14</u>	<u>13</u>	-1